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258

발의연월일: 2025. 1. 6.

발 의 자:모경종·채현일·이준석

김준혁 • 주철현 • 박정현

김한규 • 이광희 • 윤건영

김 윤 · 곽상언 의원

(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주민들의 법원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사법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2020년 3월 법률개정을 통해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지원 설치에 관한 시행일(2025년 3월 1일)과 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었음. 그러나 이전 예정 부지 조성 및 관련 절차 지연 등으로 신축사업이 지체됨에 따라 2025년 3월 1일에 개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었음.

이에 따라 부칙에 규정한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의 설치 시행일과 사건관할일을 기존 2025년 3월 1일에서 2028년 3월 1일로 개정하려는 것임(법률 제17124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부칙 제1조 및 같은 부칙 제2조제1항).

법률 제 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7124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설치에 관한 사항은 202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법률 제17124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중 "2025년"을 각각 "2028년"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17124호 각급 법원의 설	법률 제17124호 각급 법원의 설
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부칙	개정법률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3	제1조(시행일)
월 1일부터 시행한다. <u><단서</u>	
<u>신설></u>	지방법원 북부지원 설치에 관
	한 사항은 202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으로 <u>2025년</u> 3월	① <u>2028년</u>
1일부터 인천지방법원 북부지	
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u>2025년</u> 2월 28일 현재 인천지	2028년
방법원 본원에 계속 중인 사건	
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	
로 한다.	.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